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3. 7. 9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5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6월 10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96회(정례회) 제1차 위원회(2003년 7월 2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- 가. 개정이유
 - 2003. 3. 26.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개정 : 2종 폐지
 - 인감증명 : 폐지
 - 인감(신규·변경·개인)신고 : 폐지
- 다. 참고사항
 - 관계법령 :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
 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홍수)

- 본 조례(안)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서 별도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인감관련 수수료 항목을 폐지코자 우리 구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중
-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: “18종”을 “17종”으로 하고,
 - 인감에 관한 증명 중 “(1) 인감증명”을 삭제하고
 -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 : “45종”을 “44종”으로 하고,
 -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중 “(4) 인감(신규·변경·개인)신고”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법인 상위법에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의 인감관련 수수료 항목란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5. 22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 이유

2003. 3. 26.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개정 : 2종 폐지
 - 인감증명 : 폐지
 - 인감(신규·변경·개인)신고 : 폐지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규제심사 : 해당 없음.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“(18종)”을 “(17종)”으로 하고, 가항 “인감에 관한 증명” 및 (1)의 “인감증명사항”을 삭제하며, 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 “(45종)”을 “(44종)”으로 하고, 나항 중 (4)의 “인감(신규·변경·개인)신고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【별표】

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(18종⇒17종)

현행			개정 (안)		
종 목	단위	수수료	종 목	단위	수수료
가. 인감에 관한 증명 (1) 인감증명	1건	500	<삭제>	<삭제>	<삭제>

2. 각종 인 · 허가 및 신고사항(45종⇒44종)

현행			개정 (안)		
종 목	단위	수수료	종 목	단위	수수료
나. 신고 · 신청에 관한 사항 (4) 인감(신규 · 변경 · 개인)신고	1건	500	<삭제>	<삭제>	<삭제>